

영등포구의회
제155회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2010. 9. 7.

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(專 門 委 員)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■ 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10. 8. 19.
- 제안자 : 영등포구청장

■ 개정(제안) 이유

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 제26조제1항제5호 편익시설물인 “교통상황정보 안내시설물”에 대하여 서울시가 자치구 전체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“교통상황정보 안내시설물”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한 바 있어 이를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·신고 및 안전도검사 관련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선 조정하며,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려는 것임.

■ 주요골자

- 편익시설물인 교통상황정보 안내 시설물을 추가하여 서울시 전체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함으로서 광고물 관리가 용이하도록 함.
(안 제10조제2호)

-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타 자치구와 비교 형평성을 유지하고 징수방법을 세분화하여 명확성과 합리성이 부여되도록 함.(안 별표 3·4)
-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관련된 이행강제금의 산정 및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 등 부과금액의 계산방법을 추가하여 명확성을 기하도록 개정함.(안 별표 7)
- 개인정보의 보호, 서식의 간결화, 법규상의 서식 설계기준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함.(안 별지 3·5·6·7·10·11·12·14·15·16)

■ 관련법규

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
- 서울특별시교통운영담당관-16357(2009.12.2)호
-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관련 협조 요청 공문

■ 타 자치단체 조례개정 현황

- 서울특별시 25개구.

■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 제26조제1항제5호 편익시설물인 “교통상황정보 안내시설물”에 대하여 서울시가 자치구 전체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“교통상황정보 안내시설물”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한 바 있어 이를 반영하고

-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·신고 및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균등하게 조정함으로서 형평성을 유지하며, 징수방법을 세분화 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에 따른 계산방법을 명시토록 하며
- 행정서식을 개인정보의 보호·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간결화, 법규상의 서식설계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10. 9. 7.

보 고 자 : 이 남 식

【참고자료 : 관련 법령】

관 련 법 령

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

[시행 2009.10.23] [법률 제9636호, 2009. 4.22, 타법개정]

제17조 (수수료) 다음의 경우에는 그 허가 신청시·신고시·안전도검사시 또는 등록신청시에 각각 시·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7.24, 2004.12.23>

1.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
2.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
3.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

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

[시행 2010. 5. 5] [대통령령 제22151호, 2010. 5. 4, 타법개정]

제26조(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) ①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.

1. 삭제 <2008.7.9>
2. 철도역·공항·항만·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·조명탑·교통안내소·안내게시판·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
3. 고속국도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·시계탑·조명탑·교통안내소·관광안내도 및 게시판
4. 버스승강장, 택시승강장, 노선버스안내표지판,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지정게시대
5. 그밖의 공공시설물중 시·군·구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. 다만,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등이 시책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한 공공시설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다.

제46조(과태료의 부과)

- ④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 범위안에서 시·군·구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5.6.23>
- ⑥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시·군·자치구조례로 정한다.

제47조(이행강제금의 부과)

-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 범위안에서 시·군·구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5.6.23>